

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2. 7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총무과)
- 제출일자: 2025. 1. 23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. 23.(목)
- 상정 및 의결: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2. 6.)

2. 개정이유

- 세 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월배지구 근생 4구역을 한 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별표 중 대천동, 월성동, 월암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법정동의 관할 구역 정비(안 별표)
 - 월성동 1146-31 등 15필지, 월암동 218-47 등 17필지 ⇒ 대천동 이관
- 다른 조례(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) 일부 개정(안 부칙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련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
 - 「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2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입법예고(2024. 12. 11. ~ 12. 31.) 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동, 월성동, 월암동 등 세 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월배지구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을 한 개의 洞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별표에서 법정동 일원화를 위하여 월성동 1146-31번지 등 15필지, 월암동 218-47번지 등 17필지를 대천동으로 조정하고,
 - 안 부칙에서 이와 관련이 있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」 별표 중 법정동명 ‘월성동대천동월암동유천동’ 란의 행정운영동 ‘유천동’ 구역 지번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월배지구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의 법정동 간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, 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, 신지번 부여 등을 거쳐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